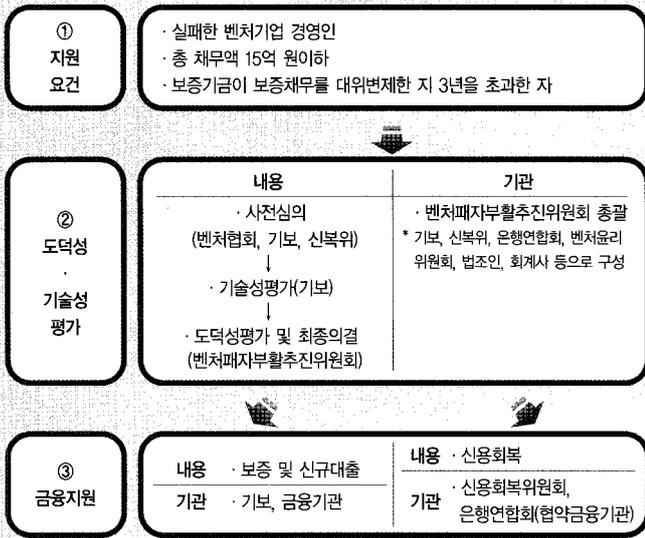


벤처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!

***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(벤처패자부활제)_ 벤처기업협회**

-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벤처 패자부활제도

① 지원 절차



② 신청 기준

- 벤처확인(97년 이후)을 받은 후 일정기간(1년 이상) 기업을 경영한 벤처기업인
- 폐업(청산)절차를 밟은 기업인
- 부채규모와는 상관없이 신용에 이상이 없거나, 연체 등 정보등록자(구, 신용불량자)의 경우, 총 채무(개인채무 및 보증채무 포함)가 15억 원 이하인 기업인
-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

※ 제외대상

- 사기, 횡령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의 당사자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기업인, 기보법상 '보증금지기업' 조항에 저촉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 현재 채무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,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(인)

*** 금융 워크아웃제도_ 신용회복위원회**

-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공동협약에 의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(09. 10월 말 기준 협약가입금융회사는 3,548개로,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분이 참여)

① 지원 대상

-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-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배우자 및 제3자의 지원 등에 의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 가능

② 지원 내용

-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
- 대출금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가능성, 담보,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
- 채무감면
- 채무자의 환경 및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, 일정범위 내에서 이자 및 원금을 감면
- 변제 유예
-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



*** 사업전환지원사업_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**

① 사업 목적

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자금, 컨설팅 등 시책 수단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

② 정의

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·품목의 사업에 진출 하는 것

③ 승인신청 대상

-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

•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,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* 현 영위 및 전환 진출업종(품목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9년 정책자금 공고 및 사업전환 홈페이지(www.kerc.or.kr) 참조

현 영위업종(품목)	전환 진출업종(품목)
모든 업종	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(단, 사치·향락·불건전 업종 영위 기업 제외)

•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%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,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

※ 신청 제외 대상

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, 전환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한지 1년 이상(신청일 현재)이 경과한 기업

④ 지원 시책

- 사업전환 무료 자가진단 및 계획 수립 지원

• 사업전환 자가진단서비스 제공(www.kerc.or.kr)

• 사업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

- 컨설팅 지원

• **지원내용** : 사업구조 개편, 신규 아이템 기획, 사업타당성 평가, 신규 사업계획 수립, 신제품 개발 및 M&A 컨설팅 등

• **지원한도** : 업체당 1,600만 원 이내 보조(컨설팅 비용의 65% 이내)

- 기술개발 지원

• **지원대상** :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승인신청 기업

• **지원한도** : 과제당 1억 원 한도 75% 출연(예정)

- 용자 지원

• **지원대상** :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 자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

• **지원내용** :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• **대출금리(변동금리)**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 차감(09년 기준금리)

• **대출기간** : 시설 -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운전 -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• **대출한도** : 업체당 40억 원(운전자금은 5억 원) - 단,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 원

-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지원

•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주식 교환, 영업 양수도 등의 절차 특례 인정

- 기타 지원

•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세제지원(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),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(고용보험법 제15조의 2 및 제16조), 유류설비 매각정보 제공 등 지원

⑤ 사업 진행 절차

